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50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자연공원 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2130	박해철의원	2025.8.1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2025. 1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2214454	안호영의원	2025.11.2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6. 3. 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4. 7.)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자연공원 내 문

화적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선정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나. 공원자원을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 자원으로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관리·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이용을”로 한다.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의2 제목과 제2조제4호의4,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의3. (생 략)</p> <p>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u>인증</u>한 공원을 말한다.</p> <p>5. ~ 10.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4의3. (현행과 같음)</p> <p>4의4. ----- ----- ----- ----- ----- ----- ----- -----지정 -----.</p> <p>5. ~ 10. (현행과 같음)</p> <p>11. <u>“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u></p>
<p>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p> <p>① · ②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u></p>
<p>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p>	<p>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p>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 ~ 5. (생략)
- 6. 공원문화유산지구

가.·나. (생략)

<신설>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 ⑤ (생략)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

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라. -----
-----관리 및 이용을-----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
-----공원자원-----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원자원-----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

④ -----
-----지정-----

-----지정-----

-----.

⑤ -----

지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
-----지정-----

-----.

-----지정기-----
-----준-----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

-----지정-----
-----.

1. (현행과 같음)
2. -----

-----지정기준-----
